

의안번호	2210822
의 퇴 인	문진석의원
회 답 일	2025.6.30.
추계번호	25D318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5조의11	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·고발인·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- 사건을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-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-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- 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 ·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타 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접수한 날 · 「검찰청법」 제10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날	의무규정
2	안 제259조의2	검사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, 공판의 일시·장소, 재판결과, 피의자·피고인의 구속·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통지	의무규정
3	안 제259조의3 제6항	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5조의11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59조의2	
3	안 제259조의3 제6항	

2. 상세 사유

□ 피해자 등에 대한 사건의 중간통지(안 제245조의11)

-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해 사건에 대한 중간통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및 통지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개정안 각호에 해당하는 통지 건수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□ 피해자 등에 대한 소송정보 통지 의무화(안 제259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검사가 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, 공판의 일시·장소, 재판결과, 피의자·피고인의 구속·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업무 증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그러나 해당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소송정보 통지 대상자인 범죄 피해자의 규모,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
- 이를 바탕으로 한 해당 업무 증가에 따른 관계 인력 증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□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(안 제259조의3제6항)

-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사건의 수를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